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2. 7. 26 선고 2021가단25977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2. 5. 31.

판 결 선 고 2022. 7. 26.

주 문

1.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0분의 10지분에 관하여 2019. 1. 5. 체결한
증여계약을 11,373,500원 한도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1,373,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
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 내지 5호증,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가. 소외 D은 2017. 2. 14. E 주식회사와 사이에 건설장비 구입을 위하여 이용금액 131,250,000원, 131,250,000원, 161,900,000원으로 하는 오토할부약정을 체결하였고, 2021. 12. 23. 기준 위 차용금 원금 42,932,930원, 39,166,806원, 35,241,168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(이하 ‘이 사건 채권’이라 한다).

나. E 주식회사는 2020. 7. 20.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, 위 회사는 2020. 12. 10.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며, 위 양도통지를 위임받은 원고는 2021. 3. 11. D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.

다. 소외 G은 1971. 6. 7.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9. 5. 30. 사망하였고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2. 5. 위 상속을 원인으로 G의 자녀들인 소외 H, I, J(각 210분의 35씩), K, L의 대습상속인 M, N(각 210분의 17.5), O의 대습상속인 P, 피고, D(P는 210분의 15, 피고 및 D은 각 210분의 10)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.

라. 피고는 2019. 1. 10. 소외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그의 지분(210분의 10, 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지분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9. 1. 5.자 증여(이하 ‘이 사건 증여계약’이라 한다)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.

마. 피고는 2021. 4. 21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Q조합, 채무자 피고, 채권최고액 6,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.

2. 당사자들의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

D이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.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나. 피고의 주장

G은 사망 이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, G의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. D 및 피고는 사해의사가 없다.

3. 판단

가.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, 2,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, G은 1998. 11. 26. 손녀인 피고가 가까이 살면서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으니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증서를 작성한 사실, G의 사망하자 2018. 12. 5. 상속을 원인으로 그 자녀들인 H, I, J, K와 피고를 비롯한 대습상속인들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연락이 되지 않던 H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위 증여사실을 알고 2019. 1. 10. 피고에게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,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4765호로 H을 상대로 위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.

나. 비록 D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,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D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, 피고에 대한 사해의사의 추정도 복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.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선희

별지